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종교단체 대표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3.18.)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1일 6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확산되며 위중증, 사망자가 함께 증가하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며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 구분 | 내용(변경사항) |
|---------|---------------------------------------|
| 시적모임 제한 | ■ (현행) 7인 이상 금지→ (변경) <u>9인 이상 금지</u> |

※ 종교시설 관련 방역수칙 이전과 변동없음

- 3. 위의 변경사항 및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사항을 전파·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자수 제시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2.3.21.(월) 0시 ~ 2022.4.3.(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9813(2022.3.4.)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3.21.(월) 05시까지 유효
- ② 2022.3.21.부터 이어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4.(월) 05 시까지 적용
- 붙임 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 4.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공문) 1부. 끝.



주무관 **3해강** 행정사무관 **차혜란** 종무1담당관 **건결 2022.** 3. 21.

협조자 종무2담당관 **윤양수**

시행 종무1담당관-834 (2022.3.21.)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3층 / http://mcst.go.kr

전화번호 044-203-2328 팩스번호 044-203-3462 / mostovoi10@korea.kr / 대국민 공개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